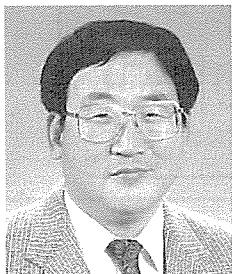


생명윤리기본법의 대안을 찾자

# 독립적인 정부기구 설립 시급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洪 旭 惠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환경과학)

지난 해 8월에 업무를 마감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여러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과학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10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20명 위원 거의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무려 18차례나 개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함께 무려 수백쪽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점 등은 이 위원회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다.

## 기본법 시안 국회상정 못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위원회가 생명공학자들과 기초 의학자들은 물론 생명윤리학계, 시민 단체, 법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두루 망라해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전체 위원이 합의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성실히 노력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도 결과적으로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처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생명윤리 기본법 시안을 작성했지만 생명공학계와 산업계, 일부 의료계와 일부 시민들(주로 유전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맹렬한 반발에 부딪혀 모처럼 사회 각 분야의 합의로 만들어 졌던 법 시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사회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사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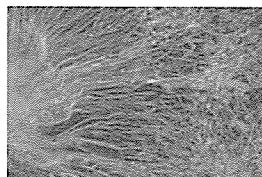
작년부터 한국에 지부를 설치해서 인간복제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었던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클로네이드사는 지난 7월 자신들이 설립한 (주)바이오푸전텍에서 한국인 대리로 3명이 참여하는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여차하면 세계 최초의 인간복제 아기 탄생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만약 실험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불상사가 초래될 가능성 또한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미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아무런 규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매년 1백억원씩 향후 10년간 총 1천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3월에는 모 사설연구소에서 사람에게서 떼어낸 체세포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해서 인간유전자를 지니는 연구용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와 사회의 감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간과 소의 세포를 융합하는 키메라 연구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 연구가 얼마나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이 업무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간에 힘겨루기에 짐작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두 부처 사이의 오랜 갈등은 지난 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통정리가 되었는데, 총리실의 조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생명윤리 단일 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된 데에 대해서 과학기술부는 적지않은 서운함을 나타냈다. 앞으로 두 부처가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난 몇개월 동안 진행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 부처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집단들 사이의 갈등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국회상정조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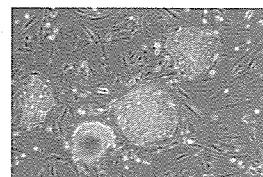
## 부처간·이익단체 갈등 계속

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생명공학계와 시민단체의 중간에 서서 연구자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충분히 고양시키면서 동시에 생명공학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음은 필자가 제안하는 그런 대안들의 일부분이다.

먼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나 보건복지부 연구진들이 제시한 ‘생명윤리안전법’ 모두가 생명공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법안



〈그림 1〉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에서 성장시킨 적혈구 세포군



〈그림 2〉 아직 분화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덩어리



〈그림 3〉 연구자가 혼미경으로 배아 줄기세포의 성장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라는 점이다. 또한 생명공학계는 이 제까지 생명윤리 관련한 규제시안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높였지 전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생명공학 규제론자들이나 추진론자들 양쪽 진영 모두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이제까지 제안된 모든 법안과 시안들은 인간복제 연구와 상업화, 배아줄기세포 연구,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 등 여러 민감한 사안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바, 이런 생명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들에 있어서는 기술적 진보가 하루가 멀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리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연구라고 해도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따라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제정하고자 한다면 생명공학 제반 연구분야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규제 범위와 규제 방법을 정하는 대신 그런 규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과기부안)나 국가생명윤리안전위원회(복지부안)의 설립을 위한 법안을 먼저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규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위원회 검토를 통한 자율적 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공학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생명공학 연구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구체적으로 국내의 어느 연구기관도 생명윤리를 고양하는 입장과 생명공학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필자의 결론은 이러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작 시급한 것은 생명공학 연구를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그런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